

제424회 임시회
'25. 3. 13.(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사유

- 수동적·부정적인 언어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단절’이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않는 상태”라고 인식되며 여성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도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이 일과 육아, 생활 등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목적 조항에서 상위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수정함(안 제1조)
- 조례 전반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용어를 수정함
(안 제2조~제4조, 제6~제7조, 제9조~제10조)
- 지원사업에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을 포함함(안 제7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약칭: 여성경제활동법)에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특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⁷⁾하고 있어 이는 사회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육아, 가사, 가족 간병 등과 같이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온 무급 돌봄이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 경력 유지와

7)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자리 잡았으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라는 용어가 결합하여 차별적 용어로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할 수 있음.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21)

취업 지원 등으로의 조속한 정책 추진 전환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국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⁸⁾ 되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경력단절’ 대신 ‘경력 유지’ 등으로 관련 용어를 수정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음.

< 참고 1 - 타 지자체 조례 입법 현황 >

연번	법령명	지자체	제·개정
1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일부개정
2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제정
3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일부개정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부개정
5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일부개정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부개정
7	무안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제정
8	부산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제정
9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제정
10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충청남도 서산시	일부개정

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의원 등 22인 발의 (24.8.20)

: ‘경력단절’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 경력보유여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포상 규정 등 내용 포함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부개정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부개정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부개정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정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부개정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부개정
17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일부개정
18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일부개정
19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수원시	전부개정
20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양시	전부개정
21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양주시	제정
22	여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주시	전부개정
23	영암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제정
24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오산시	전부개정
25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제정
26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제정
27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라남도	일부개정
28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파주시	일부개정
29	홍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일부개정

- 이에, 본 조례안은 부정적인 용어 사용의 변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당한 평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데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조례안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경력 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하여 여성 경제활동 중단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개선하고 상위법 및 현행 조례의 주요 정책추진 방향인 ‘경력단절 예방’의 맥락을 담을 수 있도록 수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상위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수정함.
 -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인용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서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⁹⁾하고 있는 바, 조례

9)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략)

리.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등), 제9조(사무의 위탁), 제10조(포상) 등 조례 전반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용어를 수정함.

- 안 제7조제3호에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조성 사업을 명시한 바,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 조례에 담아 지원사업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안 제2조(시책에 대한 경과조치)와 제3조(경과조치)는 현행 조례에 따른 시책 수립,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의 효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임.

< 개정안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은 개정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로 본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 거친 바 절차상으로 타당하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속에 내포된 ‘경력 공백으로 인한 능력 저하’의 부정적 의미로 인해 경력단절여성등에 갖는 잘못된 선입견은 경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취업을 원하지만 기회에서 배제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단절’ 대신 여성이 가진 고유하고 다양한 경험·역량·전문성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보유’로 변경해, 여성의 고용 및 근로활동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 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